

감사인 등록제 유감

고영일
인세회계법인 이사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기업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회계업계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회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족하여 운영 중인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이 큰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외부감사는 높은 수준의 내부품질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도입하려고 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회계법인 내부에 감사업무 외의 별도의 지원 부서를 두려면 회계법인 규모가 기본적으로 상당 수준은 돼야 하며,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회계법인 등은 상장회사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당장 혼자서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기 힘들면서도 코스닥상장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었던 감사인들의 업무영역이 좁아지고, 상장법인 회계감사시장은 중·대형 회계법인에 더욱 집중되는 한편 소규모 회계법인은 등록 기준에 맞춰 인수합병을 통해 재편하거나 상장사 감사업무를 아

에 하지 않는 등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사협의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기업을 포함해 상장된 법인 수는 모두 1,751개로, 2011년 3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중 971개를 소위 '빅픽'이라 부르는 삼일·안진·삼정·한영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맡았다. 이는 전체 감사 법인 수의 55.44%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123개중 20여곳은 상장법인을 아예 한 곳도 수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반연합회는 "지금까지 대형 부실감사를 일으킨 회계법인이 누구였느냐. 대형 회계법인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많았다"며 "당국에서 추진하는 등록제가 조직을 이분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할 수 있는데 여건상 못하는 경우와 아예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막아놓는 것은 분명 다르다"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중소 회계법인의 분위기도 감사반연합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빅픽' 등 대형 회계법인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중대형 회계법인들은 등록제에 거부감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미비한 중소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제 시행이 고객들에게 자격 미달로 비춰지는 등 외부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주어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등록제 추진에 앞서 감사품질에 문제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상장회사 감사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회계업계는 1,751개 상장회사 중 대다수가 12월 결산법인으로 감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관에 일부 대형 회계법인만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면 업무과부하로 오히려 감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회계감사를 하려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2년의 수습 등을 통해 감사인 자격만 갖추면 되지, 감사인 자격 외에 또 다른 자격을 갖춰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의 배경이 되는 회계감사 관련 제도와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를 보면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관련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설립요건은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사원과 10인 이상의 소속공인회계사, 5억원 이상의 자본금,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회계법인이나 타 감사반에 소속되지 않은 개업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하나,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회계법인인 감사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재무제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조서 작성 보존, 감사보고서 감리,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인 품질관리 감리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감사보고서 감리와 품질관리 감리는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상장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증권선물위원회 위탁)에서 강도 있게 진행되고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20시간이내의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실감사를 방지 또는 제재하기 위한 제도, 관리시스템과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회계법인에 대해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일류법인과 그렇지 못한 이삼류법인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인회계사

법」에 규정된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감사인 등록제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인 것이다.

중소 회계법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회계감사 수임제도와 회계감사 현실에 있다.

1980년12월3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유수임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채택해 오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지배주주와 임원주주를 제외한 최대주주 2인, 지배주주를 제외한 최대 채권금융기관 2인, 지배주주를 제외한 최대 기관투자자 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감사 1명과 사외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순수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피감사인인 기업이 '갑'이고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을'인 관계가 형성되어 회계감사 계약시부터 부실감사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는 셈이다.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최대주주, 최고경영자, 회사 실무책임자 등 소수에 의해 사전 결정된 후 형식상의 서류 절차만을 밟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수임제란 감사 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회사 스스로 판단해 적당한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 수수료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으로 정하라는 일견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수임제 하에서 대다수의 회사들이 선호하는 외부감사인은 수수료를 적게 받고 적당히 회계분식을 눈감아줄 수 있는 회계법인이다. 그리고 자유수임제는 외부감사인을 회사가 선정하고 감사

수수료를 외부감사인과 회사간의 자율 합의에 의해 정하게 되므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절대적으로 많고 피감사회사의 수가 한정되고 정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 계약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미국에서도 엔론, 월드컴 부실감사 사태 등을 통해 자유수입제에 대한 환상은 처참히 깨졌고 그 결과 사베인-옥슬리법 등 여러 보완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감사인의 컨설팅 업무 제한, 감사업무품질관리제도 구축 운영 등 미국과 유사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상장 대기업이더라도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기업이 적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본주의 기업문화와 선진 경영시스템이 확립되어 있고 회계 투명성과 감사인의 수준이 세계 최고인 미국식 제도를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렵다.

실제로 일선 대기업과 코스닥 업체들의 분식회계가 횡행하는데도 무늬만 회계감사를 벌이는 행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소 회계법인들의 경우 사실상 회계감사를 부탁하는 기업들에 '울의' 역할을 하고 있어 부실회계 의혹이 있을 경우 밝히기가 어렵고 대형 회계법인의 파트너(이사)들의 경우에도 계속적인 감사수입 여부가 자신의 승진, 수입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므로 회사의 분식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기소한 두 군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4명은 은행의 분식결산을 적발하고도 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하거나 구체적인 입증절차를 포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부산저축은행의 감사 등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담당 회계사들에게 분식결산 사실을 누락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감사회사와 회계법인 간 감사보고서를 암묵적으로 공모하는 행위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사라지기 힘들다. 회계법인이 엄격한 감사를 할수록 향후 감사업무를 수주하기 어렵게 되는 마케팅 논리 때문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감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위험이 높아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이익 기여도가 낮은 피감사회사에 대해서는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표명하기가 중소 회계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소위 영양가 있는 회

사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엄격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회사 요구에 반하는 감사의견을 소신있게 표명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일부에서는 부실감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들이 직업 윤리 의식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감리 등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며 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감사인 등록제와 같이 법적 규제 장치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및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간의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한 논란은 각기 처한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 나름대로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고 있다.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회계감사의 본래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차원에서 감사인 등록제 보다 시급하게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현행 회계감사 자유수입제도에 대한 소견을 간략히 피력하고자 한다.

최소한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서 회계법인을 일정기간 마다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를 제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제가 있듯이 지정된 감사인에 대해 피감사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감사인을 재지정하는 감사인 기피제 등의 예외적 보완사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감사인 지정제를 근간으로 해서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 우선순위와 혜택을 차별화 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과 감사 신뢰성 강화에 즉각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자유수입제에 부수되는 사항이지만 자유수입제 하에서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정부투자기업, 시중은행, 극소수 대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감사수수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여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보통 최저가를 제시한 회계법인을 선택하고 있다. 물론 해외 채권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나 해외에서 IR이 필요한 회사들은 미국의 유력 회계법인과 멤버십 네트워크를 가진 회계법인 중에서만 선택해야 되는 한계가 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사

보수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 경우에 감사인은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사활을 위해 감사수수료 덤핑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통한 감사수입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감사투입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감사수수료는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회사와 감사인간에 알아서 정하라며 금융감독당국이 감사수수료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나중에 부실감사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손해배상책임 부과, 형사처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死後藥方文’ 격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에 적합한 영역이 있고,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초우량 글로벌기업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강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요즘 우리 사회는 ‘상생’과 ‘동반성장’이 화두로 회자되고 있다. 소속 공인회계사 숫자나 형식적인 품질관리제도와 절차 등 외관적인 기준만이 아니라 역량, 창의, 열정, 윤리 등의 정성적인 요소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때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회계법인들을 우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대마불사’, ‘크고 보기 좋은 것이 미덕이다’, ‘승자독식’의 논리와 사고방식으로는 영원한 추종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당국, 감사인, 감사대상회사가 모쪼록 머리를 맞대어 단기적이고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중적이고 맹목적 모방식의 졸속 방안이 아닌 현실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회계부문 국제 신인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해 마지 않는다. ☺